
2017년 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7.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7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7 .6.(목) 10:00 ~ 11:35
-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정호경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 ◆ 안 건 : 직권심의 3건
 - (2017-26)서울시 공원 전체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 (2017-27)'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 (2017-28)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년도, 업종, 가스 사용량, 전력사용량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보류
 - 인용

【 의안번호 2017-26 직권심의 】

안건명 : 서울시 공원 전체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9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춘일 위원님, 이유진 위원님, 전진한 위원님, 정호경 위원님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심의안건 3건인데요, 직권심의 3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은 해당부서에서의 심의기준 요청의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제일 먼저 의안번호 제2017-26호 직권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 출석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장 ○○○입니다.

〈○○○ 주무관〉

- 공원녹지정책과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의안번호 제2017-26호 공원녹지정책과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26호 공원녹지정책과 소관 직권심의 건입니다. 청구인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공원안전등급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했고, 주관부서는 평가결과 전문, RED 공원 현황, 공원안전 일제조사 등 일부 정보에 대하여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하고, 공원등급별 개소수 등 평가결과와 비상벨,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보도 이후 해당부서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서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관부서 팀장, 주무관계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팀장〉

- 네.

〈○○○ 위원〉

- 본 안전은 ○○○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것이 처음 애초에 시작이 된 것이 기자분이 청구를 한 것이죠?

〈○○○ 주무관〉

○ 맞습니다.

〈○○○ 위원〉

○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2년치인가가 과거에 RED준으로 설정했던 숫자가 감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 주무관〉

○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그 이후 개선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이것을 공개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비공개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이 등급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였느냐의 부분입니다. RED공원은 주로 공원 안에서만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에서 오는 사건

들과 노숙자, 주변에 위치한 학교의 흡연학생들이 많이 몰려있을 경우 RED공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RED공원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험한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피해자수나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 팀장>

○ 그 자료는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피해자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시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 누가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RED존이나 그 등급을 설정을 할 때 피해 발생이나 피해자 숫자나 사례 같은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 주무관>

○ 그 부분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7대 범죄 발생에 따른 112신고 외에도 단순 노숙자, 취객, 비행청소년 상주에 대한 신고까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희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인식을 해서 리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분한 것인데, 마치 RED공원 자체가 굉장히 우범지대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RED공원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언론사가 그 RED공원을 찾아내어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바람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우리가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요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일단은 비공개 사유가 3호로 비공개 결정 하셨

는데 어떻게 3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팀장〉

- 지금 RED 공원이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 큰 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500m² 이하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주택가랑 같이 붙어있습니다. 주로 사건이 접수되는 부분이 공원 내부가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표됐을 경우 이 지역이 우범지대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서 범죄 충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 오히려 지금 사건 발생이나 원인을 보면 취객이나 학교 주변 공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개되는 경우에 학부모들의 지도를 통해서 그 공원을 가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이고 그러면 오히려 피해는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3호의 사유 중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지장을 미친다는 부분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 팀장〉

- 아마 홍대나 용산 같은 주위나 마로니에 공원 같은 취객이나 노숙자 무료급식소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서 공개해도 상관 없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있는 공원은 실제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 이런 곳은 주택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공원에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아서 공원 인근의 집들도 위험한 집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땅값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검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

- 주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까?

〈○○○ 팀장〉

- 그러니까 이곳이 상대적으로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도둑이나 절도 같은 사건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겁니까.

〈○○○ 위원〉

- 아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 팀장〉

- 시행한 지 현재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범죄율의 변화나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 위원〉

-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팀장〉

-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여기가 우범지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발표됐을 때 일반분들이 봤을 때 그곳을 우범지대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 그러면 우범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하고 설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관리나 주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간사〉

- 다른 나라는 총기 소지자 주소, 그리고 심지어는 성범죄자 얼굴까지 다 공개하고 우리나라도 점차 공개의 범위가 넓어져가고 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 팀장〉

- 저희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사건이 하나라도 더 터지면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일 뿐이지, 위원회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굳이 공개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 입장이나 인식의 차이로 생기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3호에 나오는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공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RED공원이라는 타이틀이 찍히지 않도록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공원을 좀 더 깨끗하고 좋게 만드는데 있어서 이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닐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 참고로 검찰청 같은 데에서는 5대 범죄가 많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정보

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팀장>

- 현재에도 어느 구에 몇 개 공원이 있는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이름을 밝히면 주소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 위원>

- 초반에는 그 공원을 기피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용 시간대를 조절하거나 주변 주민들이 각자의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보가 차단되다 보니 그런 조심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 그리고 처음에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공원 자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자정노력을 또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 위원>

- 이 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험한 공원들을 조사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자칫 그것이 위험한 공원이라고 인식이 돼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비공개

를 하고 개선을 할 시간적인 여유를 벌 것이냐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런 문제를 당연히 공개를 할 것이고, 공개를 하더라도 치안 시스템이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공개가 되면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저도 언뜻 볼 때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그런 효과 정도만 생각하면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편 지금 담당자들의 우려가 결코 그냥 막연한 우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증은 된 바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우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위원〉

- 담당부서에서는 그 공원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갖고 있는 정보와의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외부요인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바이기는 하지만, 혹시 경찰청과 달리 협의를 통해서 공원의 분류방식을 다각화한다든가 평가방식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기에서 3호의 비공개 사유로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이 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3호를 들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3호 같은 사유로 했을 때는 사례라든지 어느 증거를 적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이왕에 공개하기로 하셨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안 했으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한 번 공개하시는 것도 알권리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담당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막연히 “공개하면 좋지.” 이렇게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몇 호의 사유가 적절할지 고민을 해봐도 가능한 사안이 3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3호로 비공개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처음에는 공개할 경우에 주변에 집값도 하락하고 동네의 평가도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범죄가 사는 곳을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공원평가에 대해서도 평가기준과 결과를 잘 설명하고 안내하면 어떨까 합니다.

〈○○○ 위원〉

- 그것을 등급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D라는 표현이 조금 더 공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미흡은 어떨까요?

〈○○○ 팀장〉

- A, B, C로 한다든지 하는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주무부서에서는 적절하고 올바른 기준을 잡아서 공원등급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정보를 시민에게 잘 제공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7-27 직권심의 】

안건명 :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27호 직권심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담당부서 팀장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의안번호 제2017-27호 수집연구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27호 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소관 직권심의 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중에서 박정희 작가의 작품 구입 건에 대한 ‘물품검사(수) 조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시립미술관에서는 작품 가격정보는 작가의 향후 미술시장 내에서의 작품가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인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미술계 내의 작품 시장가격 형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심의회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 일반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의 현재 소장작품 가격정보는 다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때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낮은 뮤지엄 프라이스라는 기준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국·공립미술관 내 소장품은 재투자의 가치가 아니라 영구 소장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집해 왔다가 다시 재판매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국·공립 미술관들은 작품을 수집을 하게 되면 영구소장이고 다시 되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평가심의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가들의 매매희망가격보다는 평균적으로 60~7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외부 시장에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공립미술관에 소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는 공공미술관에서 구입할 당시에 매매한 금액이 개인정보 차원이고 실제 외부에서 작품을 대여해 달라고 했을 때 작품을 구매를 알려주었더니 작가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금액이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품검

수조서의 요구사항에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 겁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우선 말씀 잘 들었고요.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정보소통광장 속속정보에 ○만 원이라는 가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과장>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담당자가 올렸다면 비공개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예전에는 서울시가 각 신문사나 언론사의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 했습니다. 광고비가 아시겠지만 언론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 예산을 쓸 때 그 예산지출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특수활동비나 이런 제한적인 경우를 빼고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때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까?
-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보시면 오히려 공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과장>

- 그런데 미술작품이 물품같이 정해져 있는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가 있는데 같은 사이즈에 같은 작품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 위원>

- 광고비도 그랬습니다. 같은 광고라도 조선일보하고 한겨레하고 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또 그분들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심판에서 다 공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 과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개인과 기업 차이 정도는 아닐까 싶고요.

<○○○ 위원>

- 화가라고 하는 분들은 개인이 기업인 것이죠. 그리고 공적으로 돈을 우리가 공공자금으로 구매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 어쨌든 공공기관에다가 자신의 작품이나 물건을 판매할 때 그런 것이 노출되는 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제가 볼 때는 많은 화가들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이 걸리는 것을 원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과장>

- 작가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공공기관에 소장품으로 자기 작품이 들어갈 수 있는 자체도 굉장히 큰 자기의 이력이 되기 때문에 판매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하향평가 되어서 매도를 포기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도 전제조건으로 시립미술관에 들어간 가격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미술관에 들어온 작품이 다른 미술관에도 들어갈 때에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싶어하

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 위원>

○ 미술도 예술이지만 조형물이나 설치물도 예술이지 않습니까?

<○○○ 과장>

○ 조형물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건축법상 말고라도 여러 가지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역사 앞에 있는 신발 같은 것도 얼마인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 과장>

○ 약간 case by case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미술관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형물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금액이 이미 공개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사실은 같은 예술작품이고 조형물과 달리 봐야 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 정보소통광장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자료고, 저는 비공개할 만한 이유를 딱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 저는 일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공개해서 서울시 미술관에 들어가는 가격이 원래 시장가격보다 낮다라는 인식이 앞으로 다 공유되면 공개돼도

별 문제가 없고,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공개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작가들 입장에서 저렴하게 매도할 수도 있는데 공개가 되면 더 비싸게 팔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적인 가치를 공개를 통해서 박탈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면에서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시립미술관 구입가격은 원래 공공성의 가치 때문에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형성된다는 인식이 성립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경매시장에서는 얼마 됐다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 과장〉

- 전부 다 오픈하고 그러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의 작품과 제자의 작품에 대한 가격평가 심의에서 제자의 가격이 높게 나올 경우 스승인 교수가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공산품처럼 가격이 아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구매를 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 조형물의 경우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작품에 대해서 내부위원들이 평가해서 통보하는 가격은 다르다는 겁니다.

〈○○○ 위원〉

- 어쨌든 안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과장〉

-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안 팔 수도 있고 안 사도 되는 것이나 공공미술관 입장

에서 우수작품에 대한 미래가치를 잃어버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경자 작품 같은 경우가 당시에 한 2, 3천만 원 했던 것들이 지금 16억, 20억씩 가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립미술관 쪽에서 미술시장에 공정한 가격을 형성해 주는 이런 기능은 할 수 없습니까?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가격을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까?

<○○○ 과장>

- 맞습니다.

<○○○ 위원>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작품이 훌륭하다 해서 이 작품을 훨씬 고가로 구입했고, 그런 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미술시장의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 과장>

-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관은 작품을 구입만 하지 않습니다. 화랑 같은 경우는 구입했다가 다시 판매하고, 개인 컬렉터들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구입하고 또 팝니다. 그러니까 매년 금액이 달라지고, 또 작품이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작품 가치가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팔고 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 위원>

- 얼마에 구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공개될 경우에는 나름의 지침에 시장에 주게

되는 것이죠.

<○○○ 과장>

○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하기 좀 그런데요 어쨌거나,

<○○○ 위원>

○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픈된 부분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조금 명성이 있으신 분 같은데,

<○○○ 과장>

○ 그럴 수 있죠.

<○○○ 위원>

○ 오히려 시립미술관에서 신진작자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해서 나중에 그 가치가 더 상승하는 효과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과장>

○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신진작가 작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원로작가 작품 중에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꼭 그 시기에 필요한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역으로 “예산의 범위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좀 저렴하게 공공미술관이니까 이 작품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해서 구입가를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공개를 해서 작가들이 작품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면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지 않습니까?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고, 다른 것과 달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또 시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니까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계약명에서 작가명하고 작품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일자나 계약금액 정도만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시립미술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작가들이 작품을 시립미술관에서 내놓는 데도 거리낌이 줄어 여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 이 계약은 법령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해당해서 공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공개법상에 사전공표 대상정보로 지정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항목의 사전정보를 공표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정보가 사전공표 되는 것을 내리려면 정보공개정책과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정보의 공표의무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정보공개법과 조례 등 법령상 명분이 있으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과연 충분히 사전공표의 대상정보에서 이 정보를 제외할 명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과장〉

- 정보공개법이 우선인 것인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 과장〉

- 참고로 시의회나 국회의 요구자료, 또는 감사원 요구자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감사용으로 필요할 경우 감사 소기의 목적 외에는 문서를 파기시켜 달라는 안내를 추가해서 파일이 아닌 페이퍼로 프린트를 해서 드립니다.

〈○○○ 위원〉

- 미술작품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7호의 작가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라는 것은 추정일 뿐이고, 근거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매수가격이 시장가격의 6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통계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작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 과장〉

- 네.

〈○○○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그 가격을 책정한 것이고, 또 강요가 아닌 작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인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투명하게 알리고 있고, 또 알리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좀 지장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것이 개인의 영업이익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오히려 역으로 만약에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았으면 그분은 찬성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뉴스에도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이 되면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반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감수하고 판매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자체의 성격상 작가에게 심각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오히려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니까 다른 작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경우를 고려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과장〉

- 그런데 심지어 저희 기관이 국립현대미술관 또는 다른 시립미술관에다가 그 기관 소장품 구매가격을 문의해도 서로 안 가르쳐줍니다. 국·공립미술관들이 모두 작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작품을 수집할 때는 영구소장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인데, 이런 정보가 공개된다면 다른 작품 매도 시에 우리 미술관이 수집한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서울시립미술관은 1,000만 원에 샀는데 왜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사야 돼?’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작가 입장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적정한 가격을 협상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이익 정도

가 추정에 불과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로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것이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위원>

- 저는 조금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공개를 한다면 7호밖에 없고,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충분히 호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낍니다.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때 예술품의 가격이라는 일반 공산품의 가격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질을 고려해서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품의 가격문제는 우리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고민을 안 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것도 아니고 직권심의니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고 다음 회의에서 한번 더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다음 팀이라면 그때 한 번 또 심의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

- 어차피 이의신청인이 있어서 오늘 꼭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회의 때 모여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떤지가 저의 제안입니다.
-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비공개로 결정을 한다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작품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술관 입장에서는 협상할 때 이것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공개되니까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아래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

질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 과장〉

-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품 한 점을 사기 위해서는 4단계 심의를 거치고 반년이 걸립니다. 최종심의를 통과되면 작가한테 통보를 해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격평가에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작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 그런데 만약 지금 수집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저희는 하나의 안을 더 만들면 됩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지금 매매한 금액을 공개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라고 고지하고 거부하는 작가의 작품은 구입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는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또 염두에 뒀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이것이 서울시립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국·공립미술관의 수집담당자들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서 거기의 입장들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시의 모든 예산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이 다 알아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예산을 감독·통제하는 그 기관에서

잘 샀는지 잘 안 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가격 자체가 시민한테 공개돼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그런 사유로 비공개 하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나 특정경비 이런 부분만 빼고는 시민이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을 쓴 내역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 제 말씀은 국회나 시의회와 같이 예산 사용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가격 하나 하나까지 시민에서 다 공개되는 것이 반드시 예산통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

- 제가 봐도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예술작품들은 다 공개됩니다. 미술만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형물이나 이것은 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 과장>

- 조형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금액 가액이 책정된 상태에서 작가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어쨌든 그분들도 자기들을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과장>

- 아니죠. 그 금액에 맞춰서 작품을 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렇다고 해도 금액에 맞춰서 더 낮은 질의 작품을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 위원>

- 다른 조형예술을 하는 작가들도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형평적인 부분에서 보면 미술만 사실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

- 미술작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다 수익계약이지 않습니까? 창작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위원>

- 수익계약이니까 오히려 더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계약은 1,000만 원 이상은 법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

- 진행을 위해서 ○○○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 위원>

- 1년에 몇 작품이나 구매하십니까?

<○○○ 과장>

- 한 200여 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약건수로 따지면 한 1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관장님께서 다른 기관의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계의 실태를 좀 더 알려주시면 제가 볼 때도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미술계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신중하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소통광장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과장>

- 이것은 미술관에서 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관련 과에 요청을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위원분들이 미술계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의견으로 다음 번 기회에 다른 미술관 의견을 더 제시해 주시면 보다 충실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

- 감사합니다.

【 의안번호 2017-28 직권심의 】

안건명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년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28호 직권심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계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녹색에너지과에 근무하는 김금호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제안번호 제2017-28호 녹색에너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28호 녹색에너지과 소관 직권심의 건입니다. 청구인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년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부서에는 각 업체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위원〉

- 소관부서에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 없으십니까? 추가 보완해서 말씀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 주무관〉

- 네, 추가 보완사항 없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여기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들어서 비공개 사항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했을 때 업체가 입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지 판단하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 주무관〉

- 에너지 사용량이 그 내용에 보면 사업규모라든가 영업상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과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개별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원래 다소비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의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서 처리된다는 것을 전제사항으로 수집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위탁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데 공단에서 이 자료를 관리할 때도 비공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 썼는지를 가지고 사업 규모나 영업내역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 이신 것 같은데 추측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사용량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지, 비밀을 유추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통계법상으로도 보면 통계처리 때문에 수집한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이유 말고 혹시 명단을 공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의제기라거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주무관〉

- 다소비사업장 신고 업무는 원래 시·도지사 업무지만 위탁에 의해 공단에서 신고를 받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의 사용량을 통계 내서 사용량 규모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다 보니 공단에도 공개요청이 가끔씩은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해본 결과 공단에서도 통계법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사례로 2016년도에 중앙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사용량에 대한 수치나 통계자료는 공개가 가능한데 개별명단과 각 사용량에 대한 것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

기관으로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

-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만 가지고 경영상의 비밀을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심판에서는 특별히 경영상 정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서 비공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 보고 앞으로도 학교뿐만 아니라 명단을 보면 대상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부에 대해서 공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기존사례를 보니까 다소비 업체 숫자는 공개하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위 50개 기업순위, 기업 연간사용량을 공개하신 이력이 있는데요.

<○○○ 주무관>

- 과거자료를 봤더니 2013년부터 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업체수나 사용량 합계, 통계자료는 공개를 했는데 개별 사업장명이나 사용량을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를 했고, 단 한 번 2014년도만 보니까 상위 50개의 업체명과 사용량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 비공개 근거로 통계법을 드셨는데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작성에 관련되는 수치도 비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는 왜 공개하셨습니까?

<○○○ 주무관>

- 제가 보기에 숫자나 전체총량 이런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통계법에 따르면 수치까지 비공개 해야 하는데 수치는 공개하고 있으니 통계법은 비공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주무관>

- 전국에너지 사용량이나 아니면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이나 다소비사업자의 업체수나 사용량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다소비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연 1회 통계작성의 목적에 따른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에너지 공단에서 공표하는 것은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전에, 또는 목적 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계법에 따른다고 하면 업체명뿐만 아니라 숫자라든지 사용량 통계 작성 전에 공개하는 것도 안 되죠. 어떤 부분은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통계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비공개 근거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7호 영업상의 비밀,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인데 에너지 사용량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공개됐을 때 법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는지.

<○○○ 주무관>

- 에너지공단에서 일단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고 그것을 지금 국가가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중간에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제공되기도 하고, 실제로 숫자뿐만 아니라 명단 자체도 제공된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이것이 영업상의 비밀이고 그것이 그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한다라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 주무관〉

-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에너지 사용량 자료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산업부나 국토부에서도 개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공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 위원〉

-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목록을 쪽 보면 한 5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납득이 갈 만하게 규모가 큰 학교, 병원, 그리고 대기업, 굉장히 단지가 큰 아파트거든요. 규모가 크면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영업상의 비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의문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많이 공개됐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이를 우려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허위로 신고를 한다거나 전력을 비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 위원〉

- 보통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 법인의 매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여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 법인의 매출이나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악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총량으로 구체적으로 이 전력량이 어느 부분에 많이 썼냐, 쓸데없이 많이 썼다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이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사업규모와 연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겁니다.

〈○○○ 위원〉

- 사실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양자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왜 공개해야 되는지 이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제가 에너지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군가가 매달 제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다 공개한다고 생각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죠.

〈○○○ 위원〉

- 저도 생각이 조금 다른데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신고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이라고 과연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지난 심의 회의록을 보면 법인들도 다 나름의 사정들이 있고 자기 개인기업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때 텐데 그 신고가 공개를 위한 신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이 안건이 직권심의에 상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량, 사용량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 위원〉

- 여기 에너지다소비업자 신고제도의 전제를 보면 개별 작은 사용료까지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천 톤 이상인가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그 이후부터는 나름 정부에서 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집하는 것이어서 모든 법인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고 다 오픈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 신청인이 에너지 많이 쓰는 업체의 명단을 뽑아 가지고 에너지절감장치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너지 통계를 받는 이유는 다소비업체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공공기관이 신고받고 관리하는 것이지, 그 정보가 영업에 활용되어서 에너지절감장치 사업자가 제 정보를 보고 절감장치

써보라고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 개인하고 법인은 동일하지 않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분들은 이 공공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경제라든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논점으로 돌아와서 에너지 사용량인 전력사용량, 가스사용량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제가 보기에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다소비업체 명단을 요청을 해서 공개한다고 하면 현황을 확보해 가지고 특정 건물에 대해서 몇 년간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량을 보면 여기가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올랐다거나 이런 것여서 영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 위원>

-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비밀이 될 사유가 안 됩니다.

<○○○ 주무관>

-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업장의 영업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쭉 주기적으로 몇 년 동안 요청해보면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보고도 이 호텔의 영업실적이 좋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사>

- 주식시장에 보면 훨씬 더 유용한 경영상·영업상의 빅데이터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왜 굳이 에너지 사용량을 추적을 해서 영업이익을 판단합니까?

〈○○○ 주무관〉

-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는 주식을 투자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 이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영업이익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

- 리스트를 보니까 공공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기업도 있고 있는데 이 개별 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력사용량과 가스사용량이 경영상·영업상 정보는 맞는 것 같고, 남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비밀이냐의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다라고 하면 비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명단만 제공하느냐, 아니면 사용한 전력량, 가스량까지 제공해야 되느냐에 대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것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인지 여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도 규모면 대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공개도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세부적인 지출비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단순히 전력사용량이나 가스사용량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밀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하도록 해서 정부가 관리 측면에서 신고를 하도록 했을 겁니다. 하나 그런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법인의 기본적인 내밀한 가치를 갖는 고유한 법인 영업상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 되었을 경우에 법인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그 정보도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고, 이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과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수집했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기관이 정책적 판단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익과 공익을 공개하는 것에서 공익을 비교형량해서 다소비업체들을 이 범위에서 공개하겠 다라고 하면 반대하지 않지만 어떤 사업체가 다소비업체에서 목록과 사용량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시에 공개하는 것은 제7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일단 두 분은 본 안전인 개별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한 위원님께서서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개하더라도 사용량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 위원〉

- 일단 제 생각은 사용량 정보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업체명은 사례도 있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가스 개별소비량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저는 다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둘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공개됐을 때에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아주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아마도 다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더 이상 추가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전체적으로 3대1 정도로 해가지고 본 직권심의의 건은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이상으로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